

# 공공도서관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의 공연권 제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imitation on the Right of Public Performance in the Individual Watching Cinematographic Works in Public Libraries

정 경 희(Kyoung-Hee Joung)\*\*

### 목 차

- |                            |            |
|----------------------------|------------|
| 1. 서론                      | 4. 논의 및 제언 |
| 2. 영상저작물 관내열람과 공연권 제한      | 5. 결론      |
| 3. 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관내열람 현황 분석 |            |

### 초 록

현재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 규정의 개정 및 도서관의 영상저작물 사용에 대한 저작권산권 단체의 저작권료 지급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서비스가 공연권의 제한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연의 개념과 저작권산권 제한 및 공정이용 판단기준, 공연권 제한규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이 공연권 제한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 K시의 6개관 이용자 121명을 대상으로 영상저작물 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이 공연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하지만, 관례의 해석을 적용하면 공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이용자 대다수는 대출을 위하여 도서관에 방문하였고,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관내열람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법상 공연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재생도 공연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6개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연권 제한 범위에 포함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ABSTRACT

Article 29 in the copyright law of Korea, public performance and broadcasting for non-profit purposes will be revised. The copyright agency has tried to impose copyright fees on the use of cinematographic works such as DVDs in public libraries. The paper studied that the individual watching cinematographic works in public libraries is included in the concept of public performance in the copyright law. Also,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n the situation of use of cinematographic works in public libraries. As a result of the study, watching DVDs in facilities for 1~3 persons in public libraries could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public performance. But the main purpose of most of DVD users was for circulation or reading. The library service for individual DVD watching will therefore not affect the commercial income of the copyright holders. Finally the study suggested that if the service for the individual watching of cinematographic works in libraries is included in the concept of public performance, the copyright law needs to be revised so that the service is included in the exception to the right of public performance.

키워드: 영상저작물, 공연권, 공연권 제한, 공공도서관, 저작권법

Cinematographic Works, Right of Public Performance, Limitation to the Right of Public Performance, Public Library, Copyright Law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조교수(khjoung@hansung.ac.kr)

논문접수일자: 2012년 7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12년 7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8월 1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3): 133-155, 2012.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3.133]

## 1. 서론

###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도서관 소장 자료의 대다수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인데 DVD 등의 영상자료도 그 중 하나다. 도서관의 영상저작물(이하 영상물) 서비스는 주로 대출, 관내열람, 관내 공연장에서의 영화상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관내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영화상영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되어 공연권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데 도서관에서의 영화상영도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영상물의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무료로 상영할 수 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물일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지불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관내열람이나 대출은 공연권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저작권법상 다른 권리의 적용도 받지 않으므로 영상물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발행시점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 3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고<sup>1)</sup>에 의하면 영상물 저작권위탁관리 단체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영상물을 관내에서 열람하는 것도 공연권의 적용을 받는 이용이므로 이에 대해서 도서관이 저작권료를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위탁관리단체가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저작권법상 '공연'의 개

념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관리단체는 개별 설비에서의 개별적인 열람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작권료를 요청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노래방이나 DVD방에서의 영상물 이용이 공연에 해당한다는 판례<sup>2)</sup> 때문이라고도 보인다. 위탁관리단체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도서관은 관내열람 서비스에도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영상물만을 제공하거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6개월 이전의 영상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것은 도서관 입장에서 보면 이용허락의 절차라는 업무부담과 저작권료 지불이라는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일 도서관이 6개월 이후 영상물만을 관내열람 서비스로 제공하게 된다면 이용자들은 그동안 이용하던 서비스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설령 위탁관리단체의 해석대로 도서관의 관내열람이 저작권법상 공연의 개념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용에 대하여 공연권 제한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판례에서의 공연개념 해석은 영리적인 목적의 영상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부과하기 위한 해석이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 창작자에게 다양한 권리를 부여하지만, 저작물 이용의 성격에 따라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예외로 두기도 한다. 즉,

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73호 (사)한국영상산업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 1288.

비영리적이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이면서 그러한 이용이 저작권자들의 경제적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저작권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도서관에서의 영상물 관내열람 서비스에 대한 공연권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러한 서비스가 저작권의 제한 혹은 공정한 이용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 1.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의 영상물 관내열람은 저작권법상 공연의 개념에 포함되는가?

둘째, 영상물 관내열람은 6개월 경과조건 없이 공연권 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연구문제를 위하여 저작권법상 공연권과 그 제한 규정, 관련 판례, 기존의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영상물 관내열람 이용의 성격을 파악해야한다. 따라서 경기도 지자체 중 공공도서관 수가 많은 6개 지역의 도서관에서 영상물 관내열람을 위한 개인용 시청설비 현황을 조사하고, 영상물 관내열람자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의 영상물 이용의 의도성, 빈도, 대체 상황에 대한 선택 등을 조사하였다. 공공도서관으로 조사범위를 제한한 것은 다른 관중보다 공공도서관의 영상물 서비스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1.3 선행연구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도서관의 저작권 문제를 다룬 연구(이순자 1988)가 있었지만 본격적 연구는 디지털도서관 관련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전개된 디지털도서관 구축 및 서비스, 2000년도 저작권법 제28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개정, 그 이듬해 동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되면서 도서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2000년도 법 개정 이전에는 기존의 도서관 면책규정에 대한 개정 방안에 대한 연구(이경윤 1997; 남윤희 1999)가 이루어졌고, 2000년 법 개정 이후에는 개정 내용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윤명, 정준민 2002; 이호신 2002; 홍재현 2004). 또한 2005년 저작권법에 도서관 보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송재학 2007; 홍재현 2011). 최근에는 저작권법 제31조 전반에 대한 개정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윤희운 2010; 김종철, 김영석 2012; 유희경 2012). 이와 같이 그동안 도서관과 관련된 저작권 연구는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도서관에서의 공연권 문제를 다룬 이호신의 연구(2006)는 제31조 이외의 저작권 문제를 고찰한 국내 최초의 논문이라고 보여진다. 이 연구는 지역주민 대상 연주회, 동화구연, 영화상영회, 멀티미디어자료 열람 행위 등과 같은 도서관의 문화행사와 저작권법상 공연권과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영상물을 개별적 시청을 위한 공

간에서 열람하는 것도 저작권법상 공연의 개념에 포함되어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저작물의 이용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도서관의 영상물 서비스가 관외대출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이로써 기기를 구비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므로 개인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공공서비스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도서관내 열람을 대체한 이용으로서 관외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존하는 실익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외의 저작권법은 국내와 달리 도서관에서의 공연권 제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에 Cross(2012)는 도서관에 제공되고 있는 스트리밍 형태의 비디오 서비스가 기존의 라이선스 체결을 통한 비디오 서비스와 달리 인류의 기록 보존이라는 도서관의 고유 역할 수행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공정이용 논리와 교육용 이용에 대한 저작권 제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스트리밍 방식의 비디오 서비스시 발생하는 비디오자료의 보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논의한바 있다.

하동철의 연구(2006)는 국내 저작권법의 공연권 및 그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도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나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공연권 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선모금, 청소년 보호 등의 공익 목적을 위한 공연에 대한 저작권은 면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판매용 음반과 영상물의 공연

권 제한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의 문화혜택 확산이라는 배분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음반의 공연권 제한은 판매량 증가에 기여하여 음반제작자들의 간접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 때문에 가능하지만, 영상물의 공연권 제한의 근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공연권 제한규정에서 영상물의 재생에 대한 공연권 제한을 없애는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하동철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김병일(2012) 또한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영상물에 대한 공연권 제한은 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해할 정도로 이루어지므로 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의 도서관을 포함한 사회부조, 교육목적 등 공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판매용 영상물의 6개월 경과 후 공연 규정 또한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보상금지급 의무가 있으며, 6개월이라는 규정도 판매용 영상물의 유통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정할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을 위하여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에서의 영상물 상영이 비디오나 DVD 시장 축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 후 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수 있는 경우 적어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한다고 하였다.

## 2. 영상저작물 관내열람과 공연권 제한

### 2.1 '공연'의 의미와 요건

저작권법이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크

게 저작권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다. 이중 공연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저작권법 제17조)이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호는 '공연'을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정의에는 공연의 각 행위 유형과 '공중에게 공개'한다는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공연의 각 행위 유형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선 상연이란 연극적 저작물을 무대 위에서 실현시키는 것을 말하며, 연주란 음악저작물을 악기로 실연하는 것, 가창이란 음악저작물을 음성으로 실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구연과 낭독은 어문저작물을 구두로 표현하는 것이며, 상영은 영상화된 저작물을 영사막이나 기타 물체에 영사하는 것을 말하며, 재생이란 상연이나 연주 등을 녹음 또는 녹화한 복제물을 재생하는 것을 말한다(오승중 2012, 424-425).

공중에게 공개한다는 것의 의미도 간단하지는 않다. 저작권법 제2조 제32호는 '공중'을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있다. '특정'이란 행위자 사이의 개인적 결합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특정'한 관계가 무엇이며 '다수'는 어느 정도의 숫자를 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정할 수가 없다. 따라

서 저작물의 종류나 이용 형태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오승중 2012, 428). 정의 규정에 특정 다수인을 불특정 다수인과 병치하여 기술하지 않고 괄호 속에 포함시킨 것은 이처럼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불특정 다수인은 반드시 공중의 개념에 포함되지만, 특정 다수인은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중이라고 보기 위한 것이다(문화관광부 2005, 22).

공개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공연행위의 동시성과 장소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저작물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히 공연에 포함된다. 그러나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개가 아닐 경우 이를 공중에게 공개한다는 것에 포함해야 할지는 모호하다. 저작권법 상 공연의 정의는 단순히 공중에게 공개한다고 되어 있을 뿐 시간적 차이를 둔 공개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러나 판례<sup>3)</sup>에 의하면 공중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이다.

또한 공연이 행해지는 장소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완전히 개방된 장소, 개방되지 않은 장

3)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 1288. 이 판례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노래방 영업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죄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공연권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이 판례는 이후 영화감상실(DVD방)에서 DVD 영화를 상영한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저작권 침해 판정을 하였다.

소, 노래방과 같은 공개된 장소 안의 제한된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방되지 않은 장소라도 통상적인 가족의 범위를 넘는 다수가 모였다면 이를 공개로 보아야 하며, 공개된 장소 안의 제한된 장소라 하더라도 사용되는 장소의 주된 성질이 공중에게 영화를 재생하는 시설의 성격을 가질 경우 공개적 장소라고 볼 수 있다(하동철 2006, 118-120).

이와 같이 공중의 개념, 공개의 동시성, 장소성을 종합하면 공연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진다. 즉, 완전히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동시에 공개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공개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 혹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시간에 공개하는 것, 공개된 장소 안의 제한된 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혹은 서로 다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공개 등도 공연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2 저작재산권 제한과 공정이용 판단 기준

저작권법은 저작자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부여하지만 그 보호가 지나쳐 창작물이라는 과실을 사회 구성원이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그 재산권을 제한한다(임원선 2009, 160).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기준으로는 3단계 테스트(3-step test)가 있다. 이것은 베른협약 제9조 2항의 복제권 제한 요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권리제한은 첫째,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야하고, 둘째,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해서는 안되며, 셋째, 저작자

의 합법적 이익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특별한 경우라 함은 이용목적과 이용형태 및 이용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그 저작물이 일반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이용을 저해하는 수준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합법적 이익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권리 제한으로 인해 권리자의 불합리한 소득 상실을 가져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오승중 2012, 546-547; 최경수 2010, 376-377). 이러한 3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저작재산권은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이용에 대하여 국내 저작권법은 제2관에서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제25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제31조)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다.

또한 제2관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도 제35조의 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포함될 경우 저작재산권은 제한될 수 있다. 제35조의 3 제1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의 2까지, 제101조의 3부터 제101조의 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 즉, 공정한 이용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첫째,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둘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셋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넷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1년 국내 저작권법 개정시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법에 열거된 범위에서만 저작재산권 제한을 적용하였던 것에서 더 나아가 저작물의 이용 일반에도 확대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3 공연권의 제한

공연권도 위와 같은 일반적인 저작권 제한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제한된다. 특히 공연권을 제한하는 근거는 첫째, 공중의 문화적 혜택이라는 공익적 필요, 둘째, 이러한 이용이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그 침해가 미미하다는 것, 셋째, 오히려 이러한 이용으로 저작물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져 궁극적으로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이 증대한다는 점(박문석 1997, 355)이다. 그러나 그 제한은 일반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하동철 2006, 277).

국내 저작권법 제29조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과 방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

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제1항이 모든 유형의 저작물의 공연과 방송에 대한 규정이라면, 제2항은 판매용 음반과 영상물의 재생에 대한 규정이다. 제1항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는 것,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공연의 관중이나 제3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 실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만 받지 않는다면 영리 목적이라도 공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2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공연권을 제한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오승중 2012, 627) 이에 대한 예외를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sup>4)</sup>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제시된 예외규정은 영리성을 가진 업소에서의 공연(시행령 제11조 1~7호)과 비영리 기관에서의 공연(시행령 제11조 8호)으

4)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09.7.22, 2009.8.6>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로 구분할 수 있다. 비영리 기관이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청소년수련관, 구민회관 등 사회부조나 교육적 성격을 가진 공익을 위한 기관(김병일 2012, 86)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이라도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판매용 영상물을 재생하는 것은 공연권 제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6개월이라는 기준은 2005년 12월 개정된 저작권법<sup>5)</sup>에서 도입된 것이다. 개정 이전에는 6개월 제한규정이 없었으므로 현행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에서 열거한 공공시설에서 영상물 발행 후 즉시에도 공연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6개월 제한 규정이 도입된 이유는 비영리 기관이라도 발행 후 6개월 이내의 판매용 영상물을 무료로 상영하는 것을 금지하여 영상제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문화관광부 2005, 1)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6개월 제한 규정이 판매용 영상물의 유통현실을 반영하

지 못하고 있고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상금지급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김병일 2012, 86)도 있다.

## 2.4 관내열람의 공연권 제한 가능성

『2011 한국도서관연감』에 의하면 2010년 말 전국 공공도서관 수는 모두 759개관이며 소장한 도서자료는 67,487,591책, 연속간행물은 129,945종, 비도서자료는 3,051,789점이다. 1관당 도서수는 88,916책, 1관당 비도서수는 4,021점이다. 비도서자료는 도서자료의 4.5% 정도이다. 공공도서관이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LP, CD, CD-ROM, DVD 등의 비도서자료를 장서로 확보하고 이를 서비스하는 이유는 공공도서관의 문화적 기능과 관련된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나 정부 또는 다른 형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5) 2005년 12월 30일 제19240호.



태의 조직에 의하여 설립, 지원, 경비조달이 이루어지는 조직으로서 일련의 자원과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Christie & Barbara 2010, 1-8).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1994)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이용자가 모든 종류의 지식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정보센터이다. 따라서 모든 그룹의 이용자가 자신의 요구에 맞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전통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현대의 기술과 모든 형태의 미디어를 장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선언은 문화유산과 예술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모든 공연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서관법 제28조도 공공도서관이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공중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확대하고 싶어하는 공간이 음악이나 영화감상실과 같은 문화시설이었다(서혜란, 김선애, 강은영 2008, 149). 이것은 유네스코가 제시한 지역주민의 예술에 대한 인식 고양이라는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문화예술 서비스의 하나인 영상물 서비스는 주로 관외대출, 관내열람, 영화감상회 세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관외대출은 일반 도서의 대출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도서관 이외의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봉도서관 이용자규정』 제 14조 '대출자료 수'는 도서와 더불어 비도서자

료도 1회에 2점 대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와 달리 기본대출 기간(14일) 이상으로 연장할 수는 없다고 정하고 있다. 관내열람은 영상물을 대출하여 도서관 내의 지정된 설비를 이용하여 시청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도서는 개가제로 운영하여 대출의 절차가 필요 없지만 비도서자료의 경우 폐가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출의 절차를 거쳐 해당 자료를 볼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여 시청하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책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책상과 의자를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영화감상회는 대규모 시청각실에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영상물을 재생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공공도서관은 앞서 언급한 문화적 기능,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갖추고 있고 이 공간을 영화상영 서비스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영상물 이용 중에서 공연권과 관련된 것은 관내열람과 영화상영이다. 영화상영은 공연의 유형 중 재생에 해당되며, 불특정 다수가 동시에 공개된 하나의 장소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공연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의 비영리 목적의 영화감상회라 할지라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단서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8항에 의거하여 판매용 영상물일 경우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만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관내열람 방식의 이용은 다소 모호한 점이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영상물을 위한 시설은 주로 1인용 설비가 많으며 일부 도서관은 가

족이나 친구가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좌석을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공연을 공중에 공개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공중이란 불특정 다수(특정다수인을 포함)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1인용 설비 혹은 가족석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불특정 다수로 볼 수 없어 이를 공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판례의 해석 즉, 공중에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적용하면 1인석에서의 이용이라 하더라도 시간을 달리하여 여러 번 이용함으로써 이들 이용자들이 불특정 다수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관내열람 역시 공연의 범위에 포함되고, 앞서 영화감상회에서처럼 6개월 제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판례의 해석이 적용되려면 불특정 다수의 구성원이 동일 영상물을 반복 이용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재산적 피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위의 판례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래방, DVD방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건에서 이루어진 해석이므로 이를 공공도서관의 최소한의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저작권법 제2조 제32호는 '공중'을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있는데, 정의 규정에 특정다수인을 불특정 다수인과 병치하여 기술하지 않고 괄호 속에 포함시킨 것은 불특정 다수인은 반드시 공중의 개념에 포함되지만, 특정다수인은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중이라고 보기 위한 것(문화관광부 2005, 22)이다. 즉,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DVD 방에서의 영상물 이용이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도서관에서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물 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영화감상회의 경우 동시에 다수의 이용자들이 관람하는 경우이지만, 관내열람일 경우 6개월 이전의 영상물을 영화상영회 참가자들만큼 다수가 시청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로 인한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손실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2과 2.3장에서 언급했듯이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목적이나 저작물의 종류, 그 이용으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피해 등을 기준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공연권은 공중의 문화적 혜택이라는 공익성도 제한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될 경우 공정한 이용에 포함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의 관내열람이 저작권법상 공연의 개념에 포함되어 그 제한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내열람의 성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공공도서관 관내열람 설비 현황과 해당 서비스 이용자들의 영상물 이용목적, 의도성, 영상물 저작권자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영향 등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 3. 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관내열람 현황 분석

공공도서관에서의 관내열람 서비스가 유료로 영상물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을 흡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 경기도공공도서관연감』(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1, 386-391)에 의하면 2011년 3월 현재 경기도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167개관이다. 이용자에 대한 조사에 앞서 경기도의 27개 시 지역 도서관 중 시립도서관이 7개 이상인 9개 지역 중 상위 6개 지역의 영상물 이용설비 현황을 조사하였다. 단, 각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도서관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지만, K시의 경우 2012년도 하반기에 개관한 2개 도서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연감에 제시된 도서관과 조사대상 도서관 수는 실제로 차이가 있다. 실제 조사한 도서관은 총 6개 지역 55개관이었다. 설비 현황조사는 기본적으로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시설 현황을 조사하였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상물 관내열람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도서관 수가 가장 많았던 K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시청 설비가 가장 적었던 1개 도서관을 제외한 6개관에서 영상물을 시청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바로 회수하였다. 설문은 2012년 6월 30일~7월 7일 사이에 실시

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는 121부였다.

### 3.1 관내열람 설비 현황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6개 지역 55개 공공도서관 중에서 1인 혹은 3~4인이 영상물을 시청할 있는 설비를 갖추고 관내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43개관(78%)이었으며, 시청설비는 모두 294대였다. 개별 도서관별로는 최소 1대부터 최대 17대까지 다양하였으며, 1개 도서관당 평균은 6.8대였다.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략 5~7대 정도였다. 또한 도서관에 따라서는 개별열람 시설 이용자를 초, 중학생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청석은 1인석 뿐 아니라 다인석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55개 도서관 중 10(18%)개 도서관에 다인석이 있었으며, 개별적인 방의 형태로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설비를 제공하는 도서관도 1곳 있었다. 다인석은 주로 2~6인 정도 사용할 수 있었다. 다인석의 경우 도서관별로 최소 2대부터 최대 6대까지 있었다. 전체 영상물 시청 설비 중 약 8.2%가 2~6명까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

〈표 1〉 경기지역 공공도서관의 영상물 시청용 설비 현황

지역	도서관 및 설비	시립공공 도서관 수	시청 설비 제공도서관 수	시청 설비 수 (지역별 평균)	다인석 제공 도서관 수 (다인석 수)
K시		12	8	44(5.5)	1(4)
P시		10	6	46(7.7)	2(3)
S시		9	9	65(7.2)	2(4)
Y시		9	6	22(3.7)	0
B시		8	8	59(7.4)	3(7)
N시		7	6	58(9.7)	2(7)
계		55	43	294(6.8)	10(25)

### 3.2 영상저작물 이용 현황

#### 3.2.1 설문응답자의 인구적 특성

공공도서관의 영상물 관내열람 이용자의 인구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남녀비율은 54% 대 46%로 남성이 약간 많았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3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0대와 20대(각각 28%)가 많았다. 직업별로는 대학생이 2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회사원(22%), 중고등학생(21%) 순이었다.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합치면 55%로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기타 응답자로는 과학자, 대학강사, 병원치료 중인 환자, 운동처방사, 자영업자, 전문직 등이 있었다(〈표 2〉 참조).

〈표 2〉 설문응답자의 인구적 특성

성별	빈도	%
남성	65	54
여성	56	46
계	121	100
연령별	빈도	%
10세 이하	6	5
10대	34	28
20대	34	28
30~40대	38	31
50대 이상	9	7
계	121	100
직업별	빈도	%
초등학생	12	10
중고등학생	26	21
대학생	29	24
가정주부	8	7
회사원	27	22
취업준비생	7	6
기타	12	10
계	121	100

#### 3.2.2 영상저작물 부가서비스 이용 현황

영상물 부가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DVD 구매 및 대여, DVD방 이용, VOD 시청을 최근에 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DVD 구매경험은 거의 없는 경우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1년에 1~2장 구매하는 경우가 29%였다. 90%에 이르는 이용자들은 1년에 1~2장 혹은 거의 구매 경험이 없는 이용자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가끔 구매한다는 경우와 2~3년에 1장 구매한다는 경우가 있었다(〈표 3〉 참조). DVD 대여경험이 있는 경우는 구매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약간 많았지만, 거의 없거나 1년에 1~2회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8%에 이르렀다. 비교적 빈번히 이용한다고 할 수 있는 1달에 1~2회 대여하는 경우는 13%에 그쳤다(〈표 4〉 참조).

〈표 3〉 DVD 구매 경험

항목	빈도 및 %	
	빈도	%
거의 없음	73	60
1년에 1~2장	35	29
1년에 3~4장 이상	10	8
기타	3	2
계	121	100

〈표 4〉 DVD 대여 경험

항목	빈도 및 %	
	빈도	%
거의 없음	68	56
1년에 1~2회	27	22
2~3달에 1~2회	9	7
1달에 1~2회	16	13
기타	1	1
계	121	100

DVD방 이용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8%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1년에 1~2회 이용하는 경우는 12%, 1달에 1~2회 이용하는 경우는 8%에 불과하였다. 기타 응답자는 1달에 5회로 매우 자주 DVD방을 이용하는 경우였다(〈표 5〉 참조). VOD 역시 이용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70%)가 대다수였으며, 2~3달에 1~2회 정도 시청한다는 경우가 14%였다. 기타 응답자는 3년에 1~2회 정도라고 답하였다(〈표 6〉 참조).

〈표 5〉 DVD방 이용 경험

항목 \ 빈도 및 %	빈도	%
거의 없음	94	78
1년에 1~2회	15	12
2~3달에 1~2회	1	1
1달에 1~2회	10	8
기타	1	1
계	121	100

〈표 6〉 VOD 이용 경험

항목 \ 빈도 및 %	빈도	%
거의 안 봄	85	70
2~3달에 1~2회 정도	17	14
1달에 1~2회 정도	10	8
1주일에 1~2회 정도	5	4
기타	4	3
계	121	100

3.2.3 영상저작물 이용 목적 및 선택 기준  
공공도서관의 영상물 이용자들의 주된 방문 목적이 영상물 시청인지 아니면 도서대출이나 자신의 공부인지를 조사하였다. 영상물 이용자

들의 도서관 이용빈도는 1주일에 1~2회 혹은 3~4회인 경우가 각각 32%, 33%로 비슷한 정도였다. 즉 과반수 이상이 적어도 1주일에 1회 이상 방문하는 이용자들이었다(〈표 7〉 참조). 도서관에 오는 주된 목적에 대한 질문에 120명이 응답하였다. 이중 55%는 책을 보고 대출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고, 16%는 영상물 이용이 보다 우선된 목적이었다. 또한 13%는 열람실을 이용하러 온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응답자 8명은 도서대출과 DVD 이용 둘 모두라고 응답한 경우였다(〈표 8〉 참조).

〈표 7〉 도서관 이용 빈도

항목 \ 빈도 및 %	빈도	%
1주일에 1~2회	39	32
1주일에 3~4회	40	33
1달에 1~2회	37	31
기타	5	4
계	121	100

〈표 8〉 도서관 방문 목적

항목 \ 빈도 및 %	빈도	%
책을 보고 대출	66	55
영상물 이용	19	16
문화프로그램 참여	12	10
열람실에서 공부하기	15	13
기타	8	6
계	120	100

도서대출이 주 목적이라고 한 이용자들이 실제로 대출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1개월간 대출 책수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59%가 1~5권 정도 대출하고, 그 보다 더

많은 6~10권 정도 대출하는 경우도 17%에 이르렀다. 거의 대출하지 않는 경우는 21%였다. 기타 응답자 중 3명은 1달에 10~20권이라고 응답하여 대출빈도가 매우 높은 경우였고, 1명은 3달에 1권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앞의 도서관 방문목적에 대한 설문결과와 관련 지어 볼 수 있다. 도서관 방문목적이 열람실 이용과 영상자료 이용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 거의 대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7명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도서관 방문의 주된 목적이 영상자료를 보는 것이었지만 더불어 책도 대출하는 이용자가 더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거의 대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엔 열람실에서 공부하러 왔다고 응답한 경우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결국 영상물이 주목적인 이용자들 중 과반수 이상이 도서대출도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9〉 참조).

〈표 9〉 1개월간 대출 책수

항목	빈도 및 %	빈도	%
1~5권		71	59
6~10권		20	17
거의 대출하지 않음		26	21
기타		4	3
계		121	100

영상물의 안내열람 빈도에 대한 질문에서 1달에 1~2회라고 응답한 경우가 38%로 가장 많았으며, 1주일에 1회인 경우도 32%로 상당히 많았다. 이번이 처음이라는 경우도 21%에 이르렀다. 기타 응답자 중에는 1달에 15~20회 정도 본다는 경우가 2명, 2달에 1번 혹은 1년에 2~3회 등 가끔 본다는 응답이 있었다(〈표 10〉 참조).

〈표 10〉 영상물 안내열람 빈도

항목	빈도 및 %	빈도	%
1달에 1~2회		46	38
1달에 3~4회		39	32
이번이 처음임		26	21
기타		10	8
계		121	100

도서관 이용자들이 최근에 출시된 영상물을 선호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120명 중에서 최신성을 주요 선택기준으로 삼는다고 답한 경우는 10%에 불과하였다. 거의 과반수에 이르는 응답자들은 작품성 있는 영화를 주요 선택기준으로 삼고 있었으며, 유명한 영화를 본다는 경우도 29%였다. 기타 응답자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 또는 재미있는 것 5명, 작품성과 유명한 영화 1명, 보았던 것을 다시보기 1명, 안본 영화 1명,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1명, 음악이 좋은 것 2명, 영어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 1명,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1명 등 매우 다양하였다(〈표 11〉 참조).

〈표 11〉 영상물 선택 기준

항목	빈도 및 %	빈도	%
최신에 개봉한 영화		12	10
작품성이 있는 영화		58	48
유명한 영화		35	29
기타		15	13
계		120	100

도서관에서 영상물을 보는 이용자들의 의도성을 파악해보기 위해 영상물 열람게기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응답자 중 59%는 책을 보러 왔

다가 우연히 관내열람한 경우였다. 이것은 앞서 도서관 방문의 주된 목적이 도서대출이라고 했던 응답자들이 55%였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무료이기 때문에 일부러 도서관에 왔거나 작품성 있는 영상물을 보기 위해 왔다는 응답자들도 35%였다(〈표 12〉 참조).

〈표 12〉 영상물 시청 계기

항목	빈도 및 %	빈도	%
책 보러 왔다 우연히		71	59
무료여서 일부러 옴		32	26
작품성 있는 영화 시청		11	9
기타		7	6
계		121	100

### 3.2.4 대체 서비스 이용

설문응답자들이 현재 영상물을 안본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도서관에서 책을 열람한다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다. 이는 도서관 방문 목적이 도서대출이라고 했던 55%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인다. 영화관 방문, DVD방 이용, TV 영화시청을 한다는 경우는 모두 합쳐서 5%에 그쳤고, 대신 영화와 무관한 일을 하겠다는 응답자는 33%로 다소 많았다. 앞서 도서관 방문 주목적이 영상물 관람이라는 응답자는 16%였는데, 이들이 도서관에서 영상물을 시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영상물을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타 응답자는 공부(3명), 등산(2명), 컴퓨터 게임(2명), 일(1명)한다 등 다양하였다(〈표 13〉 참조).

만일 도서관에서 영상물 관내열람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이용자들이 영상물 부가서비스로

이동할 것인지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영상물을 시청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34%로 가장 많았으며, TV로 무료영화를 시청하겠다는 경우가 26%, 도서관 대신 다른 무료 상영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경우가 22%였다. 비용을 지불하고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는 DVD방 이용이나 DVD 구매를 하겠다는 응답자는 각각 2%와 6%에 그쳤다(〈표 14〉 참조).

〈표 13〉 영상물 시청 대체 행동

항목	빈도 및 %	빈도	%
영화관 / DVD방 이용		4	3
TV로 영화 시청		3	2
영화관람과 무관한 일		40	33
도서관에서 책을 열람		64	53
기타		10	8
계		121	100

〈표 14〉 서비스 중단 시 대체 행동

항목	빈도 및 %	빈도	%
영상물 시청 안함		41	34
TV로 영화 시청		31	26
다른 무료서비스 이용		27	22
DVD방 이용		2	2
DVD 구매		7	6
기타		13	11
계		121	100

## 4. 논의 및 제언

제2.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목적이나 이용하려는 저작물의 종류, 그리고 그러한 이용이 저작권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재산적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그 권리의 제한 가능성을 판단한다. 특별히 공연권의 경우 공중의 문화적 혜택이나 사회부조, 교육적 목적이라는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3장에서 조사, 분석한 공공도서관의 영상물 관내열람 이용의 특성을 저작권제한 기준 및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서 이용목적과 경제적 손실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연권 제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4.1 영상저작물 관내열람 이용의 특성

##### 4.1.1 이용 목적

어떠한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제한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혹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 그 이용의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목적과 성격을 고려한다. 특히 비영리적인 목적이면서 교육적 성격이 있고, 그러한 이용으로 인하여 교육적인 것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경우 공정한 이용에 포함될 수 있다(Patterson 1991, 201). 관내열람 서비스에서 영상물 이용의 1차적인 주체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이 DVD방과는 달리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영상물을 이용하여 관내열람 서비스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비영리적인 목적일 뿐만 아니라 영상물 열람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중에 대한 문화적 혜택과 교육적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공연권 제한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도서관의 이용목적과 더불어 본 논문은 그 서비스 대상인 영상물 이용자들이 어떠한 의도로 도서관에 방문하여 영상물을 시청하는지

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설문응답자들은 설문당시 영상물을 시청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도서관에 책을 보거나 대출하러 오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경우가 많았으며, 영상물 시청이 주목적이었던 경우는 16%에 그쳤다. 그런데 도서대출 경험과 빈도를 조사한 결과 도서관 방문의 주 목적이 영상물 시청인 이용자들도 도서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영상물 시청 서비스가 도서대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물 시청이 DVD방과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공공도서관의 영상물 관내열람은 그 자체로도 공공에게 영상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매개로 도서대출이나 도서관 내 다른 문화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다. 결국 영상물 관내열람은 도서관의 문화적, 교육적 기능을 보다 확장시킬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적어도 이용목적에 비추어볼 때 영상물 관내열람이 저작권제한의 요건과 공정이용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4.1.2 영상물의 종류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는 공정한 이용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이다. 이것은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정부저작물이나 뉴스기사 등과 같은 공중의 관심사가 되는 정보를 다루는 저작물인지 상업적인 목적으로 창작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Patterson 1991, 202). 국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8항에서 '판매용' 영상물에 대해서 6개월 경과규정을 둔 것은 이러한 기준에 의거한 것이다. 즉, 비매용일 경우 발행일과



무관하게 도서관에서 공연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기준을 응용하여 관내열람 이용자들이 최신성이 있는 영상물을 관람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보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DVD 등의 영상물의 경우 발매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공공도서관의 영상물 시청자들은 최신에 개봉한 영화보다는 작품성이 있거나 유명한 영화를 중심으로 선택하였다. 이것은 도서관의 관내열람을 공연행위로 보고 발행 후 6개월 제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음을 보여준다. 만일 영상물 관내열람 이용자들이 주로 최신 발행작품을 중심으로 시청하고 있다면 발행된 영상물 유통에 어떤 정도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6개월 제한규정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 이용자들이 최신 영상물을 보기 위하여 도서관에 오는 것은 아니었다. 만일 영상물 관내열람에 6개월 제한규정을 적용할 경우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여 최신 영상물 자료를 이용하려는 특별한 일부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도서관이 외면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 4.1.3 경제적 손실

특정한 저작물 이용으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 가능성은 저작권재산권 제한 기준과 공정한 이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즉, 저작권재산을 제한하거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이용이 저작자의 합법적 이익을 저해해서는 안되므로 저작물의 이용으로 인하여 해당 저작물의 현재 시장 혹은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서관내 영상물 열람이 영상물 저작권자의 합법적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도서관의 관내열람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다른 영상물 서비스로 이동할 것인지를 파악해봄으로써 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앞서 이용목적에서도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조사결과 도서관에서 영상물 시청이 적극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영화를 보러 온 경우보다 책을 보거나 대출하러 왔다가 우연히 영상물을 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러 영상물을 보러 온 경우(26%)라 하더라도 영상물을 도서관에서 시청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영상물을 이용하겠다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에 불과하였다. 또한 도서관이 영상물 시청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다른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경우도 극히 적은 8%에 그쳤다. 이러한 설문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물 서비스가 영상물 부가서비스 산업 즉, 영상물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관내열람 이용자들은 대학생을 포함한 초·중고생이 가장 많았으며, DVD 구매 및 대여, DVD방 이용, VOD 시청 등의 영상물 부가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거나 1년에 1~2회 정도로 가끔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도서관의 관내열람을 통한 영상물 이용자가 영상물 부가서비스 산업의 주된 소비계층이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도서관의 관내열람이 영상물 저작권자가 시장에서 회수할 수 있는 합

법적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4.2 관내열람에 대한 공연권 제한 규정 도입

앞서 관내열람 이용자들의 열람의도, 이용하는 영상물의 종류, 저작권자에게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기준으로 도서관의 영상물 관내열람이 저작권자의 제한과 공정한 이용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도서관과 저작자 또는 출판사는 문화의 발전이라는 기본적 가치는 공유하지만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상호간의 가치가 충돌하게 된다. 도서관은 정보를 공공재로 인식하면서 도서관을 통하여 저작물을 대중에게 널리 이용시키는 역할을 하고, 상업적인 저작물의 저작자나 출판사는 저작물을 사유재산으로 보면서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유통을 조절한다(Gasaway 2000). 저작권법은 이러한 충돌되는 가치를 조절하여 저작자에게는 재산적 권리를 부여하고, 도서관에게는 그 권리의 제한을 통하여 도서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이 아무리 정보공유의 가치를 내세워도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기대했던 시장에서 이윤을 회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까지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또한 도서관이 정보공유의 가치를 중시한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상당한 정도로 해칠 수 있는 권리제한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도서관에서의 어떤 이용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이용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영상물은 대표적인 상업적 저작물로서 그 저작권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줄 정도로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영상물 저작권관리단체인 한국영상산업협회는 도서관에서의 영상물의 관내열람 방식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이에 대하여 6개월 제한규정을 적용하고 6개월 이전의 영상물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료를 요청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공공도서관의 영상물 관내열람자는 주로 도서대출을 위하여 방문하고 있는 이용자들이었으며, 영상물을 시청하러 온 이용자들이 도서대출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시청할 영상물 선택에서 최신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 않았고, 도서관에서의 관내열람 대신 다른 영상물 관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영상물의 부가가치 시장으로 연결되는 이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도서관의 관내열람이 영상물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권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도서관의 관내열람이 저작권의 합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도서관의 관내열람 서비스가 저작권법이 목적으로 하는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영상물의 부가가치 시장을 저해하는 것은 도서관이 아니라 인터넷상의 불법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불법 복제, 케이블이나 지상파, 위성방송 등 홀드백 혼란, 단기 이익에 초점을 맞춘 극장 위주의 수익구조, 부가시장 창출에 대한 무관심, 불합리한 계약관행 때문이라는 조사결과(장재욱 2010, 35)가

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도서관의 관내열람을 공연으로 간주하여 저작권료 징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영상물 관내열람 서비스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공연에 대한 저작권법 상 정의가 다소 모호하고, 제2장에서 언급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노래방과 DVD방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판례에서 공연의 개념이 확대 해석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서관의 관내열람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저작권법상 공연의 정의 중 '공중에게 공개한다'는 것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연의 정의에 도서관의 관내열람처럼 시간을 달리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도 포함할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해 이시성 공연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로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연의 정의에 이시성도 포함되도록 정의를 수정하고, 현행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8항과 별도로 제9항을 설치하여 도서관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한 기관에서의 이시성 공연의 경우 6개월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 5. 결론

공연권 제한규정 개정 및 도서관의 영상물 사용에 대한 저작권권 단체의 저작권료 지급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물 이용이 저작권권 제한의 범위와 공정한 이용의 기준

에 부합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에서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물 이용이 저작권법상 공연 개념에 부합하는지 그 여부가 모호하지만, 판례의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면 공연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공공도서관에서 영상물을 개인적으로 관내열람하는 이용자는 영상물만을 시청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도서대출을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영상물을 보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경우라도 도서대출도 함께 하고 있었다. 또한 도서관에서 영상물을 시청하지 않을 경우 다른 영상물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도서관의 영상물 관내열람 서비스는 영상물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정한 이용의 범위 혹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셋째, 따라서 저작권법상 공연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물 재생도 공연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이 실현할 수 있는 문화적, 교육적 기능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상 공연의 정의를 수정한 뒤 6개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공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 관내열람 방식으로 영상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공연권의 제한규정에 포함되도록 하거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관내열람 이용의 목적, 이용저작물의 종류,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도서관의 관내열람자를 대상으

로 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그 조사의 범위가 경기도 지자체 중 1개 지역으로 제한되어 본 조사결과가 전국의 관내열람 이용자를 대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조사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관내열람 이용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연권 제한 규정안이 공고되었고, 곧이어 그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영상물 관내열람 서비스에 대한 사서 또는 도서관의 인식,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관중에서의 영상물 서비스, 도서관 시청각실에서의 영화상영 서비스 현황 등을 조사, 연구하여 도서관이 공연권 제한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상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1. 『2011 경기도공공도서관연감』. 수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2] 김병일. 2012. 공연권 제한규정의 정비에 관한 연구. 『저작권정책 릴레이 토론회』, 2012년 5월 10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
- [3] 김윤명, 정준민. 2002.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 개정 저작권법(안)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9(2): 181-201.
- [4] 김종철, 김영석. 2012.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349-369.
- [5] 남윤희. 1999. 『디지털도서관에 있어서의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공정사용에 관한 연구: 미국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천안대학교 국제대학원, 미국학과.
- [6] 문화관광부. 2005. 『개정저작권법 설명자료』. 서울: 문화관광부.
- [7] 문화체육관광부. 2012. 저작권법 개정 추진, 7월 12일(목) 공청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6월 21일.
- [8] 박문석. 1997.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서울: 지식산업사.
- [9] 서혜란, 김선애, 강은영. 2008.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1): 131-156.
- [10] 송재학. 2007. 『도서관에서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도서관보상금 제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 [11] 오승중. 2012. 『저작권법』. 서울: 박영사.
- [12] 유희경. 2012.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 문제와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13] 윤희운. 2010.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상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비교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44(4): 277-301.
- [14] 이경윤. 1998. 『디지털 도서관의 저작권법상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 형식의 저작물 이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15] 이순자. 1988. 『저작권 보호와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공정사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 [16] 이호신. 2002. 『인터넷 시대의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17] 이호신. 2006.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공연권에 관한 연구. 『도서관』, 61(1): 45-62.
- [18] 임원선. 2009. 『저작권법』.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 [19] 장재욱. 2010. 『디지털 환경에서의 영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정책 연구』. 서울: 영화진흥위원회.
- [20] 최경수. 2010. 『저작권법 개론』. 서울: 한울.
- [21] 하동철. 2006. 『공연권에 관한 연구: 재구성권과 제한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22] 한국도서관협회. 2011. 『2011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23] 홍재현. 2004.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도서관 면책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93-119.
- [24] 홍재현. 2011.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 효용성 평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351-379.
- [25] Cross, William M. 2012. "Restoring the public library ethos: Copyright, e-licensing, and the future of librarianship." *Law Library Journal*, 104(2): 195-217.
- [26] Gasaway, Laura N. 2000. "Values conflict in the digital environment: Librarians versus copyright holders." *Columbia VLA Journal of Law & the Arts*, 24(1): 115-161.
- [27] IFLA/UNESCO. 1994. *Public Library Manifesto*. [online]. [cited 2012.6.20]. <<http://archive.ifla.org/VII/s8/unesco/eng.htm>>.
- [28] Koontz, Christie, & Gubbib, Barbara, ed. 2010. *IFLA Public Library Service Guidelines*. Berlin: De Gruyter Saur.
- [29] Patterson, L. Ray & Lindberg, Stanley W. 1991. *The Nature of Copyright: A Law of Users' Rights*. Athens & London: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Gyeonggido Cyber Library. 2011. *2011 Gyeonggi Public Library Yearbook*. Suwon: Gyeonggido

- Cyber Library.
- [2] Kim, Byung-Il, 2012. "A study on the modification of the limitation to the performance right provision." *Relay Discussion for the Copyright Policy*, 10 May, 2012. [Seoul: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3] Kim, Yun-Myung, & Jeong, Jun-Min. 2002. "Some arguments on the copyrights in digital library: Focusing on proposed copyright ac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9(2): 181-201.
- [4] Kim, Jong-Chul, & Kim, Young-Seuk. 2012. "A study on the provision of the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of the Korean copyright ac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1): 349-369.
- [5] Nam, Yun-Hee. 1999. *A Study on the Fair Use of Multimedia Works in the Digital Library: Mainly on the Copyright in America*. M.A. thesis, Department of American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honan University.
- [6]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2005. *Materials for Amended Copyright Law*.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7]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In order to amend copyright law, a public hearing is scheduled for July 12."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leases, 21 June.
- [8] Park, Moon-Suk. 1997. *Multimedia and Modern Copyright Law*. Seoul: Jisik-Sanup Publications.
- [9] Suh, Hye-Ran, Kim, Sun-Ae, & Kang, Eun-Young.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of Korean public library space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1): 131-156.
- [10] Song, Jae-Hak. 2007. *A Study on Copyrights in Using Literary Works at Libraries*. M.A. thesis,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Legal Affairs, Kyung Hee University.
- [11] Oh, Seung-Jong. 2012. *Copyright Law*. Seoul: Pakyoungsa.
- [12] You, Hee Kyoung. 2012. *A Study on Copyright Issues and Resolutions*. M.A. thesis,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13] Yoon, Hee-Yoon. 2010. "A comparative analysis on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in major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4): 277-301.
- [14] Lee, Kyung-yoon. 1998. *A Study on Copyright Issues about the Digital Library and Its Facilitation: Focusing on the Digitization of the Work and Its Uses*. M.A. thesis, Law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15] Lee, Soon-Ja. 1988. *Copyright Protection and Fair Use of the Copyrighted Works in the*

- Library*. Ph.D. diss.,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16] Lee, Ho-Sin. 2002. *A Study on Copyright Issue about Library in Internet Era*. M.A.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Law, Yonsei University.
- [17] Lee, Ho-Sin. 2006. "A study on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and performance right." *Doseogwan*, 61(1): 45-62.
- [18] Lim, Won-Sun. 2009. *Copyright Law of Korea*. Seoul: Korea Copyright Commission.
- [19] Chang, Jae Ok. 2010. *A Study on the Law and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Films Copyright in the Digital Environment*. Seoul: Korean Film Council.
- [20] Choe, Kyong-Soo. 2010. *Introduction to Copyright Law*. Seoul: Hanul.
- [21] Ha, Dong Chul. 2006. *A Study on the Public Performance Right: Focused on the Reconstruction and the Limitation*. Ph.D. diss.,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ogang University.
- [22]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1. *Korea Library Year Book 2011*.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23] Hong, Jae-Hyun. 2004. "A study on library exemption for the cooperative utilization of digital information by digital republication and transmission between library and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1): 93-119.
- [24] Hong, Jae-Hyun. 2011. "Evaluation on effectiveness of the compensation system for reproducing or interactively transmitting works in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3): 351-379.

